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1329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1.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24. 9. 24.

판결 선고2024. 10. 15.

주 문

-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2023. 7. 4. 체결된 주식회사 E의 주식 46,000주(피고 A 16,400주, 피고 B, 피고 C 각 14,800주)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을 위 D에게 양도하고, 소외 주식회사 E[구리시 F, 대표자 사내이사 B]에 위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심형섭

별지